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2018. 2

조영현 · 이해은

머 리 말

2021년부터 모든 보험회사는 IFRS 9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분류 및 측정하고, 손상을 인식하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야 한다. 원래 IFRS 9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회계기준이지만,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를 제외한 다수의 보험회사는 IFRS 17이 시행되는 2020년도까지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시행까지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IFRS 9이 보험회사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보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IFRS 17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과 더불어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본 보고서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ALM과 자산배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보험회사별로 IFRS 9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부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분석과 시사점이 IFRS 9 및 17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1

II. IFRS 9의 주요 내용 / 13

1. IFRS 9 개관 / 13
2. 분류 및 측정 / 14
3. 손상 / 17
4. 위험회피회계 / 20

III.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21

1. 개요 / 21
2.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에 의한 영향 / 23
3. 손상인식 변화에 의한 영향 / 26
4. 자산-부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영향 / 31

IV.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39

1. ALM 및 자산배분 시 고려사항 / 39
2. ALM 및 자산배분 현황 / 40
3. 자본변동률 분석 / 45

V. 결론 및 시사점 / 49

1. 전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 49
2.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 51
3. 감독당국에 대한 시사점 / 52

| 참고문헌 | / 53

| 부록 | / 54

부록 I. IAS 39과 IFRS 9의 분류 및 측정 비교 / 54

부록 II. IAS 39과 IFRS 9의 손상 비교 / 57

부록 III. IAS 39과 IFRS 9 간 위험회피회계 비교 / 58

■ 표 차례

- 〈표 II-1〉 IFRS 9의 손상인식 / 18
- 〈표 III-1〉 채권 1년 신용등급변동표 / 26
- 〈표 III-2〉 보험산업의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 / 28
- 〈표 III-3〉 보험회사의 용도별 대출채권 비중 / 29
- 〈표 III-4〉 보험회사 RBC 기준 부채 듀레이션 / 36
- 〈표 IV-1〉 보험회사 자본변동률 분해 / 46
- 〈표 IV-2〉 보험회사 자본변동률 그룹별 특성 / 47
- 〈표 IV-3〉 보험회사 자본변동률 그룹별 자산배분 / 48

■ 그림 차례

- 〈그림 Ⅱ-1〉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흐름도 / 16
- 〈그림 Ⅱ-2〉 Stage 분류 흐름도 / 19
- 〈그림 Ⅲ-1〉 회계제도 변화의 영향 / 22
- 〈그림 Ⅲ-2〉 생명보험회사 측정 비중(현행) / 23
- 〈그림 Ⅲ-3〉 손해보험회사 측정 비중(현행) / 23
- 〈그림 Ⅲ-4〉 생명보험회사 측정 비중(IFRS 9) / 24
- 〈그림 Ⅲ-5〉 손해보험회사 측정 비중(IFRS 9) / 24
- 〈그림 Ⅲ-6〉 생명보험회사 당기순이익 / 25
- 〈그림 Ⅲ-7〉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 / 25
- 〈그림 Ⅲ-8〉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FVPL 비중 / 25
- 〈그림 Ⅲ-9〉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FVPL 비중 / 25
- 〈그림 Ⅲ-10〉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 / 27
- 〈그림 Ⅲ-11〉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 / 29
- 〈그림 Ⅲ-12〉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 / 29
- 〈그림 Ⅲ-13〉 신용등급 하락 시 자본 감소 비율(생보사) / 30
- 〈그림 Ⅲ-14〉 신용등급 하락 시 자본 감소 비율(손보사) / 30
- 〈그림 Ⅲ-15〉 대표적 보험회사에 대한 가정 / 32
- 〈그림 Ⅲ-16〉 전환 시 기업회계상 자본의 변화 / 32
- 〈그림 Ⅲ-17〉 전환 이후 자본 변동(금리 1%p 상승 시) / 34
- 〈그림 Ⅲ-18〉 IFRS 9 전환 시 FVOCI 자산 비중(생보사) / 35
- 〈그림 Ⅲ-19〉 IFRS 9 전환 시 FVOCI 자산 비중(손보사) / 35
- 〈그림 Ⅲ-20〉 회계기준 전환 시 자본변동성(생보사) / 37
- 〈그림 Ⅲ-21〉 회계기준 전환 시 자본변동성(손보사) / 37
- 〈그림 Ⅲ-22〉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 비교(생보사) / 38
- 〈그림 Ⅲ-23〉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 비교(손보사) / 38
- 〈그림 Ⅳ-1〉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 40
- 〈그림 Ⅳ-2〉 생명보험회사 RBC 자산 듀레이션 / 41

■ 그림 차례

- 〈그림 IV-3〉 손해보험회사 RBC 자산 듀레이션 / 41
- 〈그림 IV-4〉 생명보험회사 RBC 부채 듀레이션 / 41
- 〈그림 IV-5〉 손해보험회사 RBC 부채 듀레이션 / 41
- 〈그림 IV-6〉 생명보험회사 보정 듀레이션 갭 / 42
- 〈그림 IV-7〉 손해보험회사 보정 듀레이션 갭 / 42
- 〈그림 IV-8〉 생명보험회사 FVPL 자산 / 43
- 〈그림 IV-9〉 손해보험회사 FVPL 자산 / 43
- 〈그림 IV-10〉 생명보험회사 FVOCI 자산 / 44
- 〈그림 IV-11〉 손해보험회사 FVOCI 자산 / 44
- 〈그림 IV-12〉 생명보험회사 AC 자산 / 44
- 〈그림 IV-13〉 손해보험회사 AC 자산 / 44

IFRS 9 and Implications for ALM and Asset Allocation of Korean Insurers

Beginning in 2021, all insurers should classify and measure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ze impairment and apply hedge accounting on the basis of IFRS 9. Under IFRS 9,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are very different from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IAS 39.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mpact of IFRS 9 on insurance companies, but there are few relevant studies.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IFRS 9 on insurance compani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insurance companies' ALM and asset alloc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in order for insurance companies to reduce both duration gap and capital volatility, the portfolio weight and duration of assets measured as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FVOCI) should be increased. In addition, insurance companies need to reduce their assets measured as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FVPL) in order to mitigate volatility of both earnings and capital. The expected rate of return may decline due to the reduction in the weight of the assets measured as FVPL and the increase in the weight of long-term bond. This expected rate of return decline needs to be mitigated by the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

Insurance companies with high capital volatility under IFRS 9 need to concentrate on reducing their liability duration, but it is difficult to reduce liability dur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they need to expand the proportion and duration of assets measured as FVOCI. Also they need to reduce the proportion of loans measured as amortized cost(AC) and increase

the proportion of bonds measured as FVOCI in order to decrease capital volatility under IFRS 9.

The financial authority needs to pay attention to changes in the asset allocation and risks of insurance companies in response to the shift in accounting standards.

요약

I. 서론

-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제도는 2021년부터 대폭 바뀌며,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 17의 시행이 보험회사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대다수 보험회사는 자산에 비해 부채의 만기가 길고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이 높아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가치의 변동이 큼

- 2021년에는 IFRS 17 이외에도 IFRS 9이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영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IFRS 9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회계기준이지만, 보험회사의 경우 IFRS 17 도 입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IFRS 9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손상 인식 방법이 현행 회계기준과 매우 달라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

- 본고는 IFRS 9의 내용 및 그 시행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함
 - 본고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ALM(Asset-Liability Management) 및 자산배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함

II. IFRS 9의 주요 내용

1. IFRS 9 개관

- IFRS 9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보다 단순·명확하게 하고 공정가치를 신속하게 반영함
 -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IAS 39)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며, 위기 발생 시 손상이 뒤늦게 인식되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음

2. 분류 및 측정

- IFRS 9은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측정함
- IFRS 9은 금융자산을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구분하고, 채무상품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에 의해 엄격하게 분류 및 측정하는 것이 특징임
 - 사업모형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목적,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를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그 밖의 목적임
 -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SPPI)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함

3. 손상

- IFRS 9에서는 상각후원가(AC)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에 의해 손상을 인식함

- 현행 IAS 39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함
- IFRS 9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항상 인식하도록 하며,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 위험의 변동을 갱신하여 반영하므로 현행 기준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함
- IFRS 9은 손상인식 시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함

4. 위험회피회계

- IFRS 9에서는 현행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 중심적인 현행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 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함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후적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 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함

Ⅲ.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 IFRS 9은 현행과 비교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줄 것임
 - 첫째,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방식 변화에 의해 각 측정 방식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중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자본변동성과 손익변동성이 달라짐
 - 둘째, 손상인식 방법의 변화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할 수 있음
 - 셋째, 자산-부채 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자본변동의 문제가 여전히, 자

본변동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임

2.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에 의한 영향

- IFRS 9 적용 시 현행 회계기준에 비해 보험회사의 당기손이익 변동이 커질 것으로 보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많이 재분류될수록 IFRS 9 시행에 의해 손익변동성이 확대될 것임
 - 현행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매도가능증권 중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은 IFRS 9 적용 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일부 보험회사들은 IFRS 9 적용 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자산의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손상인식 변화에 의한 영향

- 신용등급 하락 확률이 높은 BBB 등급 이하의 채권을 많이 보유한 보험회사일수록 IFRS 9 시행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가능성이 높음
 -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하거나 연체가 30일 이상 일어나는 등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경우 전체기간의 예상손실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
-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이 높은 일부 보험회사들은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 혹은 예상될 경우 많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이들은 IFRS 9 시행을 가정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하여 자본 대비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을 관리해야 함

- 특히, 대출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선제적 관리가 더욱 중요함

4. 자산-부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영향

- IFRS 9 시행 시 보험회사 대부분의 부채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시가평가되지만 자산의 상당부분은 상각후원가(AC) 혹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됨
 -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회계기준 전환 시 자본의 수준 및 변동성에 변화가 발생함
- 회계제도 전환 시점에 상각후원가(AC) 측정 자산의 비중이 작을수록, 상각후원가(AC) 자산의 원가와 시가 차이가 작을수록 자본이 적게 감소함
 -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 만기가 길어 시가와 원가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발생함
- 상각후원가(AC) 자산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기업회계상 자본변동성이 커짐
 - 또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성은 낮아짐
 - 보험회사가 회계기준 전환 이후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성을 낮추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비중 및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회계제도 전환 시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성이 현행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현행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이 매우 높은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회계기준 전환 시 오히려 자본변동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ALM을 중시한 회사들로 볼 수 있음

IV.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1. ALM 및 자산배분 시 고려사항

- 보험회사는 경제적 관점의 현금흐름 및 자본관리에 중심을 두되, 향후 시행될 IFRS 및 K-ICS와 공통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업회계 및 감독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과 회계 정보가 매우 불일치했다는 점임
 - 향후 회계기준 전환으로 경제적 실질에 관한 정보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보험회사는 경제적 실질에 대한 관리에 주력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2. ALM 및 자산배분 현황

- 현행 RBC 기준으로는 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이 길지 않으나, 대다수 보험회사의 실제 듀레이션 갭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부채 듀레이션 산출의 최대 잔존만기를 30년으로만 보정하더라도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이 -3년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됨
 - 부채사가평가제도가 도입될 2021년까지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갭을 줄이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줄일 수 있는 듀레이션 갭에는 한계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가능 자산의 전체적인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회계기준 전환 이후 손익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손해보험회사는 수익증권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국내)채권의 비중은 축소하는 반면, 외화유가증권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임
 - 외화채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 및 측정될 수 있는 자산이나, 시가가 국내금리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부채와 매칭하는 자산으로서는 한계점이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상각후원가(AC) 자산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손해보험회사는 상각후원가(AC) 자산의 비중이 확대됨
 - 손해보험회사는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 확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각후원가(AC) 자산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자본변동률 분석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자본변동률이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부채 듀레이션이 높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frac{L}{FVOCI}$)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비록 그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한 경향이 보임
 - 부채 듀레이션 축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들은 우선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본변동률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들은 보정한 듀레이션 갭이 크고,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비중이 다소 낮음
 - 또한, 이들은 자본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의 비중이 높아 경제에 충격 발생 시에 대손충당금 설정이 높아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 자본변동률이 높은 손보사의 경우 듀레이션 갭이 길지는 않지만 RBC 비율이 낮음
 - 이들은 회계제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 가장 큰 그룹임
-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저신용등급 자산 비중이 높고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비중이 낮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금리부자산 비중 확대를 통해 듀레이션 갭을 줄일 여지가 높다는 해석도 가능함
- 자본변동률이 높은 그룹은 대출채권 비중이 높고, 채권의 비중이 낮음
 - 자본변동률이 높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기타증권(주로 파생결합증권)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임

V. 결론 및 시사점

1. 전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 보험회사가 듀레이션 갭과 자본변동성을 동시에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 및 듀레이션을 확대시켜야 함
 -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상각후원가(AC) 자산인 대출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채권 비중을 확대한다면 IFRS 9 시행 이후 자본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 및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의 비중 축소가 필요함

- 현재 생·손보 각각 1.7%, 2.6% 수준인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의 비중이 IFRS 9을 적용할 경우 각각 9.8%, 14.5%로 급등할 것으로 추정됨
-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 비중 축소와 장기채 비중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률 저하는 투자영역의 다변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이면서도 국내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선진국 장기 회사채나 신흥국 국채 등의 투자 비중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외화채권은 시가의 변동이 해외 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부채의 변동과 불일치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의 비중 축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비중 확대를 실행할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 구성도 달라질 것임
 - 보험회사는 주가 및 금리리스크가 줄고 신용 및 외환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용 및 외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

2.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는 부채 듀레이션의 지속적인 축소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채 듀레이션 축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들은 우선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본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들은 대출채권 비중이 높고, 채권의 비중이 낮은 특성이 관찰됨
 - 이들은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 축소를 위해 상각후원가(AC)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비중을 낮추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채권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본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보험회사들은 이 외에도 저신용등급 자산 비중 축소와 자본확충이 필요함
 - 이러한 전략은 RBC 비율 제고와 자본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임
 - 또한, 이들은 경기침체가 예상되거나 경제 위기 발생 시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이 가장 큰 그룹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실행할 필요성이 높음

3. 감독당국에 대한 시사점

- 감독당국은 기업회계기준 전환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자산배분 및 리스크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해외 장기 국채 및 회사채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식, 파생결합증권 및 대출채권의 비중은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주가 및 금리리스크가 줄고 해외신용 및 외환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의 장기채 및 해외채권 투자 쏠림 현상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제도는 2021년부터 대폭 바뀐다.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 17¹⁾의 시행은 보험회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부채의 만기가 길며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이 높고, 금리연동형 부채라 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채의 듀레이션²⁾이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가치의 변동이 크다. 자산 듀레이션이 부채 듀레이션과 일치한다면 금리변화에 따른 자본의 변동이 없겠지만, 대다수 보험회사의 자산 듀레이션은 부채 듀레이션에 비해 짧은 것이 현실이다. IFRS 17의 시행으로 인하여 듀레이션 갭³⁾이 큰 보험회사일수록 자본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가 원가법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자산의 듀레이션만이 자본변동에 영향을 주는 반면, IFRS 17 시행 이후에는 듀레이션 갭이 자본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차이점이다.

2021년에는 IFRS 17 이외에도 IFRS 9⁴⁾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IFRS 9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회계기준이지만, 보험회사의 경우 IFRS 17 도입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⁵⁾ IFRS 9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손상 인식 방법이

1)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17 Insurance Contracts

2) 본고에서 듀레이션은 모두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을 의미함

3) 듀레이션 갭 =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익스포저 / (금리부)자산 익스포저

4)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9 Financial Instruments

5) 단, 보험사업이 비주력인 금융그룹에 속한 보험회사는 2018년부터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IFRS 9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II장에 정리함

현행 회계기준과 매우 달라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IFRS 9의 내용과 그 시행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IFRS 17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오창수·박종각(2016)은 IFRS 17에 의한 보험부채 증가 규모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하에서 추정하였다. 이 외에도 IFRS 17 도입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방안(조영현·이혜은 2017), IFRS 17 도입에 따른 감독제도 운영방안(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 오창수 2015) 등 IFRS 17과 관련된 연구는 주제가 비교적 다양하며, 연구의 수도 적지 않다.

반면,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컨설팅 보고서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정성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미미하다.⁶⁾ 본 연구는 관련 보고서들이 정성적으로 제시한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ALM(Asset-Liability Management) 및 자산배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IFRS 9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IV 장에서는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현황을 살피고, 회계제도 전환에 대응한 전략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6)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김수연(2016), J.P. Morgan(2016)을 참조하기 바람

II. IFRS 9의 주요 내용

1. IFRS 9 개관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IAS 39⁷⁾)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여 실무 해석 및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손상을 발생손실모형을 이용하여 인식하므로 위기 발생 시 손상이 뒤늦게 인식되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보다 단순·명확하게 하며, 공정가치⁸⁾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2014년 7월에 IFRS 9이 국제회계기준원(IASB)에 의해 확정·발표되었으며, 2018년부터 시행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는 IFRS 17이 시행되기 이전에 IFRS 9을 시행할 경우 추가적 회계불일치와 당기손익 변동 확대가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첫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FRS 9 적용을 IFRS 17 도입시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IFRS 9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보험회사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활동이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회사는 (1) 보험계약에서 분리한 저축요소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한 부채의 장부금액이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에 비해 유의적이고, (2) 보험 관련 부채의 총장부금액을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90%를 초과하거나, 90% 이하지만 80%를 초과하면서 보험회사가 보험과 관련 없는 활

7)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No.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8) 공정가치(Fair Value)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함

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IFRS 9 적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추가적 손익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IFRS 9을 최초로 적용할 때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⁹⁾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보험회사 및 보험사업이 주력인 금융그룹은 IFRS 17 시행 이전에 IFRS 9의 한시적 적용면제를 선택하겠지만, 보험사업이 비주력인 금융그룹에 속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2018년부터 모·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IFRS 9를 적용해야 하며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IFRS 9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의 절에서 각각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¹⁰⁾

2. 분류 및 측정

현행 IAS 39은 금융자산을 보유목적, 의도와 능력, 활성시장 공시가격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그리고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나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점이 다르다.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모두 상각후원가¹¹⁾(AC: Amortized Cost)로 측정한다. 반면, IFRS 9은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

9) IFRS 9을 적용하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되지만, IAS 39을 적용했다라면 해당 항목 전체가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IFRS 4 보험계약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된 금융자산이어야 함

10) IFRS 9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한국회계기준원(2016)을 참조 바람

11) 최초 인식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이며,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할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자산이며, 대출채권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표적인 자산임

가(AC),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¹²⁾(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¹³⁾(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측정한다. IAS 39은 분류 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IFRS 9은 금융자산을 먼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구분을 하고, 채무상품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에 의해 엄격하게 분류 및 측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모형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실질평가에 의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관측 가능하다. 사업모형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목적,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를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그 밖의 목적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SPPI¹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채권은 SPPI를 충족하지만 현금흐름이 복잡한 구조화채권은 SPPI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IAS 39과는 달리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상각후원가(AC)로 분류 및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목적의 사업모형이면서 SPPI를 충족해야 한다. 공정가치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¹⁵⁾으로 반영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 및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를 목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SPPI도 충족해야 한다. 그 밖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SPPI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

12)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임

13)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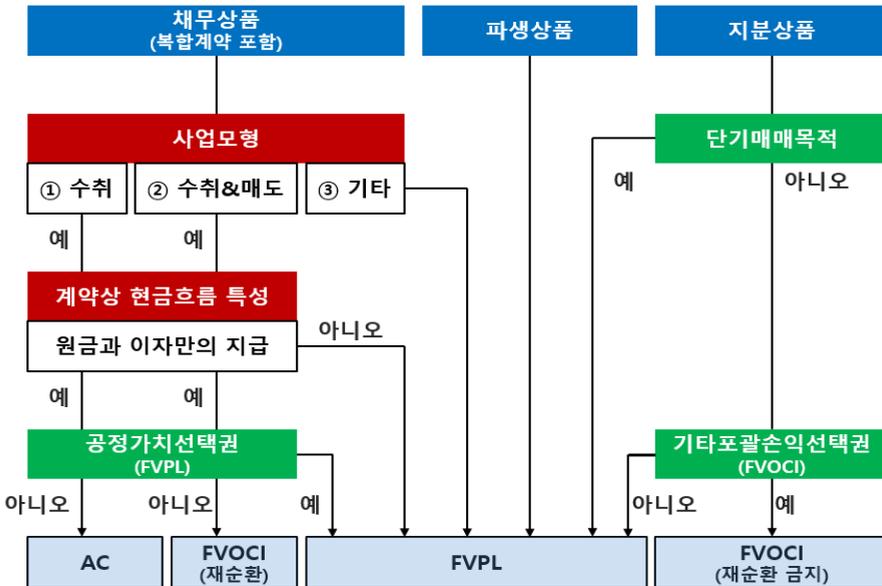
14)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경우 SPPI를 충족하였다고 표현함.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임. SPPI 충족 여부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를 이자로 볼 것인가임. 이자의 요소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임.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기본적인 대여에 따른 위험(예: 유동성 위험)과 원가(예: 관리원가), 일정기간 보유에 따른 서비스원가 및 관리원가, 이윤임.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를 참조하기 바람

15) 기타포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이며, 기말결산을 통해 자본의 누적기타포괄손익(Accumulated OCI) 항목에 반영됨

품은 공정가치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 및 측정된다. SPPI를 충족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 및 측정할 수 있다.

한편, 파생상품은 예외 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 및 측정된다. 지분상품도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 및 측정한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을 사용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 및 측정할 수 있으나, 처분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은 금지된다.

〈그림 II-1〉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흐름도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IFRS 9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현행 기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인식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

손익이 감소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주로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이러한 영향은 미미하다.¹⁶⁾

3. 손상¹⁷⁾

현행 IAS 39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는 반면, IFRS 9에서는 상각후원가(AC)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의해 손상을 인식한다. 지분상품은 손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현행 기준과는 다른 점이다. 현행 기준에서 주식은 '시가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 검토'에 따른 손상차손¹⁸⁾ 설정이 있다.

IFRS 9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항상 인식하도록 하며,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갱신하여 반영하므로 현행 기준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을 3단계(Stage 1, 2, 3)로 구분하여 인식하며,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혹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손상 여부에 따라 이자수익 인식대상 자산의 금액을 차별화한 것도 IFRS 9의 새로운 점이다.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stage 1, 2의 경우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하는 반면, stage 3의 경우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정상(Stage 1) 채무상품에 대해서도 향후 1년간 예상손실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점도 현행 IAS 39과 다르다. 향후 1년간 예상손실은 향후 12개

16) 이 외의 IFRS 9과 현행 IAS 39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주요 내용 비교는 (부록)을 참조 바람

17)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된 것임. 이러한 경우를 자산이 손상(Impairment)되었다고 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참조 바람

18) 손상차손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임

월 동안의 발생가능한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의 손실금액을 발생 확률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부실(Stage 2, 3) 채무상품의 경우 기대 존속기간에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각 사건의 발생 확률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표 II-1〉 IFRS 9의 손상인식

구분		대손충당금	이자수익
정상	Stage 1	향후 1년간 예상손실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부실	Stage 2	전체기간 예상손실	
	Stage 3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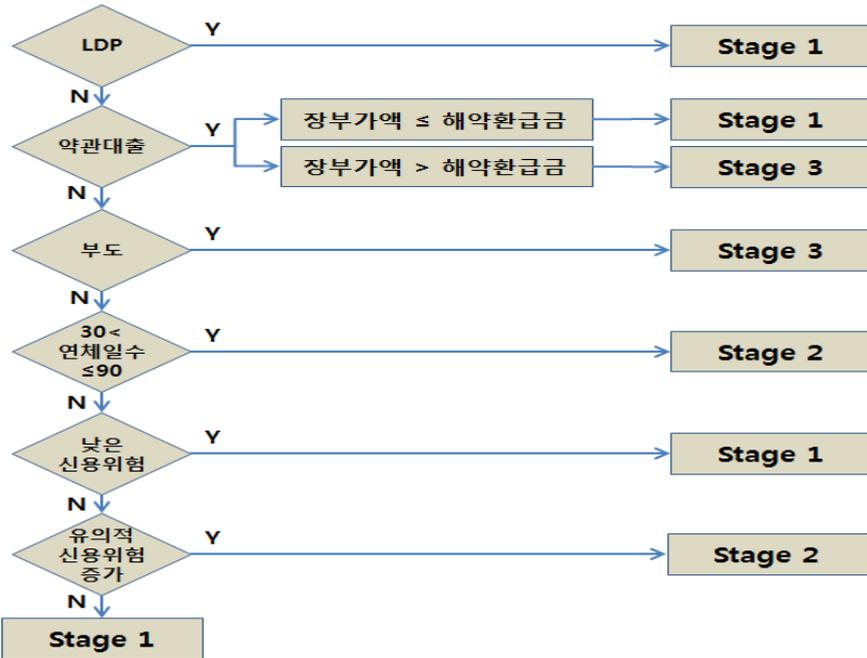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12. 16),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

손상 인식 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stage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이다. 금융감독원(2016)은 〈그림 II-2〉와 같은 방법을 하나의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¹⁹⁾ LDP(Low Default Portfolio)는 부도사건이 전혀 없거나 다년에 걸쳐 매우 드문 부도사건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를 말하며 전체적으로 신용도가 좋고 신용위험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LDP 조건을 충족할 경우 Stage 1으로 분류한다. LDP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약관대출의 경우 장부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작거나 같으면 Stage 1으로, 해약환급금보다 크면 Stage 3로 분류한다. 부도의 인식은 연체 90일 초과 및 현행 회계기준의 손상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나 90일 이하인 경우 Stage 2로 분류한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유의적 신용위험의 증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있는 채무상품의 경우 투자등급(국제신용평가기관 기준 BBB-/Baa3 이상)인 경우를 낮은 신용위험으로 판단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는 비

19) 이러한 방법이 IFRS 9를 적용할 때 인정되는 회계처리 방법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소매대출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등급이 BB+~B+인 경우 최초 인식일 대비 2등급 하락 시, B 이하 등급인 경우 1등급 하락 시 Stage 2로 분류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그림 II-2〉 Stage 분류 흐름도



자료: 금융감독원(2016)

IFRS 9은 손상인식 시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전망 정보는 과도한 비용 및 노력 없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분명한 점은 이의 반영으로 신용손실을 보다 조기에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IFRS 9은 미래전망적(forward-looking) 손상모형으로 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회계기준에 의한 경기순응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²⁰⁾

20) IAS 39과 IFRS 9 간 주요 손상인식 방법의 차이는 〈부록〉을 참조 바람

4.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의 목적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험으로 생긴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위험관리 활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²¹⁾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을 동일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손익변동성을 완화시킨다.

IAS 39의 위험회피회계기준은 기업의 위험관리 활동과 일관되지 않으며, 수많은 규정 중심의 기준내용으로 인해 실무 적용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IFRS 9에서는 현행 위험회피회계의 체계(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 중심적인 현행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 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 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후적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IFRS 9에 의해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 비금융상품 위험요소의 적격성, 공시, 위험회피의 원인에 대한 회계처리, 통합 익스포저, 집합과 순포지션,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과 중단 및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용위험회피 등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²²⁾ 기존에 실제로는 위험회피를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하지 못하거나 파생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IFRS 9은 현행 기준으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어려웠던 위험관리 전략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²³⁾ 단, IFRS 9은 정적(static)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기준만을 담고 있으며, 순액기준의 동적위험관리에 적용되는 매크로(macro)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기준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6.1.1.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BCE.183.

23) 현행 IAS 39과 IFRS 9 간 위험회피회계 비교는 〈부록〉을 참조 바람

Ⅲ.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만기보유증권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반면, 부채는 일부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원가로 표시한다.²⁴⁾ 따라서 시장금리 변동에 의한 자본 및 당기손익의 변동이 사실상 자산 가치의 변동만으로 결정된다. 즉,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성은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채권의 가치 변동에 의해 결정되며, 금리에 의한 손익변동성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채권의 가치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2021년 시행되는 IFRS 17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기 때문에 부채 또한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에 영향을 준다.²⁵⁾ 금리에 의한 부채의 변동으로 자본(순자산) 변동의 크기와 방향이 현재와 달라지게 된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현재는 매도가능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반면, 2021년에는 금리 상승 시 부채의 가치 또한 하락하기 때문에 부채가치 하락이 더 큰 경우 자본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듀레이션도 부채가 더 크기 때문에 금리 상승(하락) 시 자본은 증가(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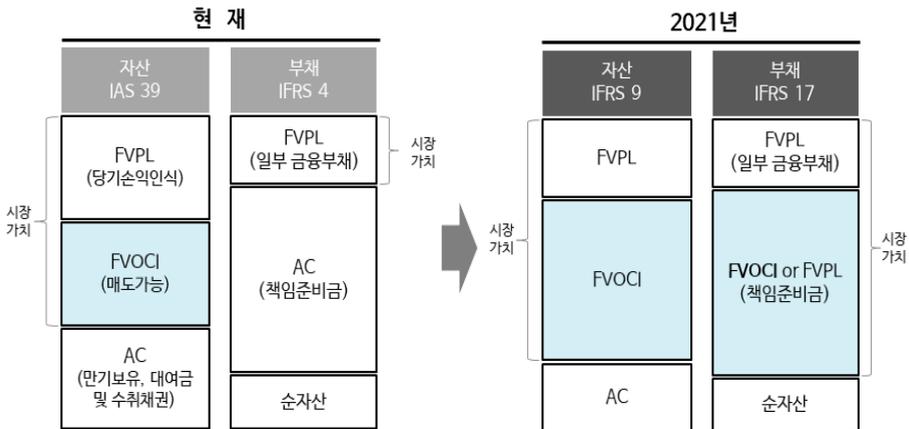
IFRS 9은 현행과 비교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첫째,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방식 변화에 의해 각 측정 방식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중이 달

24) 보험회사의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비중은 매우 낮음

25) IFRS 17에서 보험부채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할 경우 손익변동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선택하여 측정할 것임

라지고, 이로 인해 자본변동성과 손익변동성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둘째, 손상인식 방법의 변화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산-부채 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자본변동의 문제가 여전하나, 자본변동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위험회피회계 기준의 변화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받는 위험관리전략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보험회사는 현재 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을 이용²⁶⁾하고 있는데, 대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받고 있다. 기존에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어려웠던 위험 회피 전략의 경우 적용조건의 완화로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²⁷⁾ 다만, 그러한 전략의 활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날지와 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워 본 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주요 영향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그림 Ⅲ-1〉 회계제도 변화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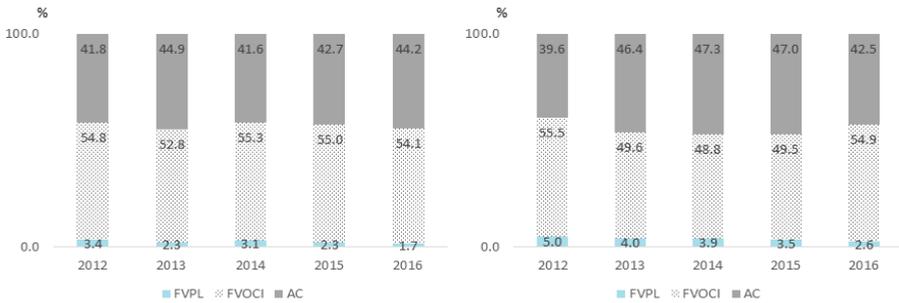
26) 보험회사는 이자율 파생상품 잔액이 적으며,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 보유 파생상품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금융감독원(2017b) 참조)

27) IFRS 9에 의한 헤지회계 적용 사례는 한국회계기준원(2016) 및 PWC(2015)를 참조하기 바람

2.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에 의한 영향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방식 변화에 의해 각 측정 방식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2016년도 기준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당기손익인식증권(FVPL) 비중은 생보사, 손보사 각각 1.7%, 2.6%로 낮다. 당기손익인식증권은 손보사가 생보사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관찰된다.

〈그림 Ⅲ-2〉 생명보험회사 측정 비중(현행) 〈그림 Ⅲ-3〉 손해보험회사 측정 비중(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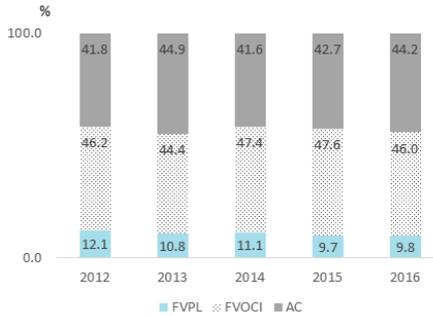


주: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레닛은 제외
 자료: 생명보험협회

주: 10개 일반손보사
 자료: 손해보험협회

2012~2016년도 자산을 기준으로 IFRS 9을 적용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 및 분류되는 자산의 비중을 보자. 이를 위해 현행 매도가능증권 중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주로 파생결합증권)이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전환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상각후원가(AC)로 측정되는 자산은 그대로 유지됨을 가정한다. IFRS 9 적용 시 생보사에 비해 손보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 증가가 크다. 2016년 말 자산을 기준으로 생보사는 9.8%, 손보사는 14.5%의 자산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으로 추정된다.

〈그림 Ⅲ-4〉 생명보험회사 측정 비중
(IFRS 9)



주: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
자료: 생명보험협회

〈그림 Ⅲ-5〉 손해보험회사 측정 비중
(IFRS 9)



주: 10개 일반손보사
자료: 손해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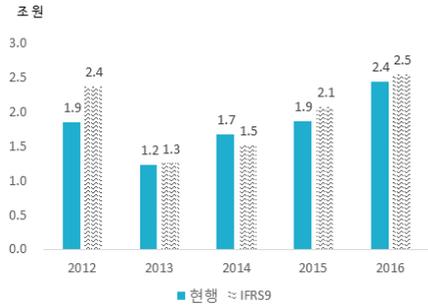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많이 재분류될수록 IFRS 9 시행에 의해 손익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단,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될 현행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수익률이 현행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 수익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IFRS 9 시행에 의해 손익변동성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으나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매우 단순한 과거 수익률 가정을 통해 IFRS 9에 의한 분류 및 측정이 당기순이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주식은 배당을 제외한 KOSPI 수익률을 가정하였으며, 수익증권은 모닝스타채권혼합형 수익률(국고채 1년 이자율 제외), 기타증권은 연합인포맥스 파생결합증권(사모) 평균 추정평가수익률을 가정한다. 현행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배당수익은 현행 기준에서도 수익으로 인식되므로 제외하며, 마찬가지로 현행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수익증권의 배당 및 이자수익은 국고채 1년 이자수익과 같다고 가정하여 제외한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 과거 당기순이익을 추정해보면, 현행 회계기준에 비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변동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Ⅲ-6〉 생명보험회사 당기순이익



주: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
자료: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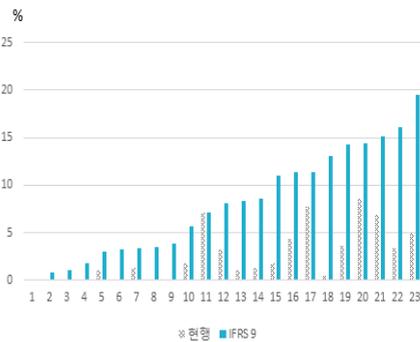
〈그림 Ⅲ-7〉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



주: 10개 일반손보사
자료: 손해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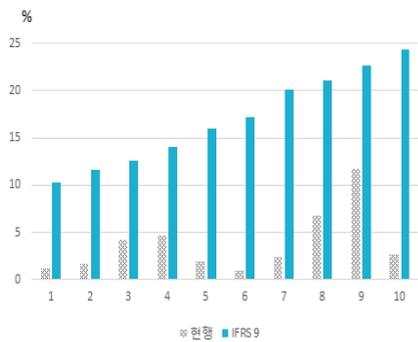
다음으로 IFRS 9 시행 시 회사별 당기순익-공정가치(FVPL) 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회사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FRS 9 시행 시 일부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익-공정가치(FVPL) 계정의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보험회사가 IFRS 9 시행 이후 손익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2021년 이전에 당기순익-공정가치(FVPL)로 분류될 자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림 Ⅲ-8〉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FVPL 비중



주: 1) 2016년 말 기준
2)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
자료: 생명보험협회

〈그림 Ⅲ-9〉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FVPL 비중



주: 1) 2016년 말 기준
2) 10개 일반손보사
자료: 손해보험협회

3. 손상인식 변화에 의한 영향

IFRS 9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의해 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상채권도 12개월 기대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특히,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은 현행 발생손실모형에 비해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투자등급인 경우에는 향후 1년 간의 예상손실만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만,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하거나 연체가 30일 이상 일어나는 등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경우 전체 기간의 예상손실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²⁸⁾ 따라서 신용등급 하락 확률이 높은 BBB 등급 이하의 채권을 많이 보유한 보험회사일수록 IFRS 9 시행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가능성이 높다. BBB 등급은 1년 후 투기등급으로 강등될 확률이 6.4% 이상으로 나타난다.

〈표 III-1〉 채권 1년 신용등급변동표

(단위: %)

구분	연말 등급								
	AAA	AA	A	BBB	BB	B 이하	D ²⁾	WR ³⁾	
연초 등급	AAA	96.22	0.16	-	-	-	-	-	3.62
	AA	0.86	88.96	2.74	0.17	-	-	-	7.27
	A	-	5.70	81.29	3.55	0.13	0.40	0.07	8.85
	BBB	-	-	7.23	69.84	3.90	2.09	0.38	16.56
	BB	-	-	0.17	4.27	55.29	7.68	4.95	27.65
	B 이하	-	-	-	0.24	3.67	54.03	8.80	33.25

주: 1) 대상기간은 1998-2016년

2)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 절차, 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신용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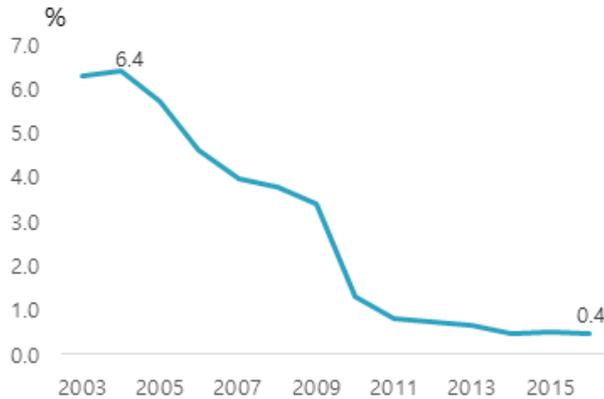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으나 상환, 피흡수합병 등으로 등급이 소멸된 경우를 표시

자료: 한국신용평가

28) 금융회사는 감독규제에 의해 대손충당금보다 많은 대손준비금(자본)을 적립하기 때문에 IFRS 9의 기대손실모형에 의한 대손충당금 부담이 일반 기업에 비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손충당금의 증가는 기업회계상 자본(대손준비금 + 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대출채권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신용위험 변동성이 낮으나, 30일 이상 연체 발생 시 유의한 신용위험 증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은 0.4%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경우 장기 연체의 증가로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림 Ⅲ-10〉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



주: 생존 보험회사만의 연체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FRS 9의 손상인식 방법 중 더욱 중요한 것은 기대손실모형에 미래전망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향후 경기가 악화되어 부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경우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게 된다. 최근 기업의 부도율은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면 과소설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금리인상에 의해 부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전망 반영에 의해 대손충당금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절에서는 보험회사의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으로 IFRS 9 시행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본고에서 저신용등급은 RBC제도에서 신용위험계수가 6% 이상인 A+ 이하 및 무등급으로 정의한다. 금융시장 충격 시 투기등급(BB+ 이하)으로 하락 가능성이 보다 높은 BBB+ 이하를 대상으로 저신용

등급을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공시되는 데이터가 A 등급과 BBB 등급 간 구분이 없기 때문에(이는 현행 RBC제도에서 A 등급과 BBB 등급 간 구분이 없기 때문), 본고에서는 불가피하게 A+ 이하 등급 및 무등급을 저신용등급으로 지칭하여 분석한다. 데이터의 부재로 수익증권에 포함된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을 파악하지 못한 점도 본고의 한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신용등급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시장 충격이나 경기 침체에 의해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대손충당금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표 Ⅲ-2〉를 보면 최근 보험회사의 저신용등급 대출채권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대출채권 비중이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각각 1.2%p, 3.1%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신용등급 채권 비중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다소 줄어들었다.

〈표 Ⅲ-2〉 보험산업의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

(단위: %)

구분		2013년	2016년
생명보험회사	채권	1.4	1.4
	대출채권	3.0	4.2
	합계	4.4	5.6
손해보험회사	채권	2.6	2.0
	대출채권	6.1	9.2
	합계	8.7	11.2

주: 손해보험회사는 국내 일반 10개사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신용 대출채권 증가는 저금리 환경에서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자 PF대출 등 기업대출을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3〉을 보면, 생보사 및 손보사 모두 최근 3년 동안 기업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보험회사의 용도별 대출채권 비중

(단위: %)

구분		2013년	2016년
생명보험 회사	가계 대출채권	67.0	61.2
	중소기업 대출채권	20.0	24.0
	대기업 대출채권	13.0	14.8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채권	0.0	0.1
손해보험 회사	가계 대출채권	60.4	52.4
	중소기업 대출채권	26.7	31.4
	대기업 대출채권	12.9	16.1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채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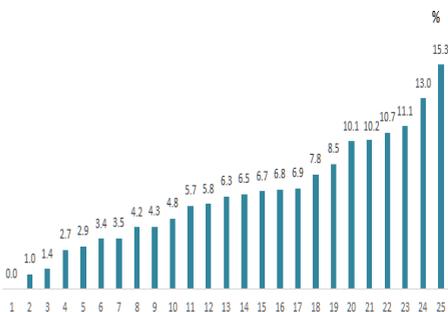
주: 1) A+ 이하 및 무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수익증권에 포함된 것은 제외)

2) 손해보험회사는 국내 일반손보 10개사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은 회사별로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생명보험회사 1개사, 손해보험회사 2개사는 2016년 기준 저신용 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이 15%를 상회하였다. 반면, 10개 생명보험회사는 5%를 하회하였다. 이러한 편차는 회사별 투자위험 감내 여력, 투자위험 허용한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1〉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



주: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Ⅲ-12〉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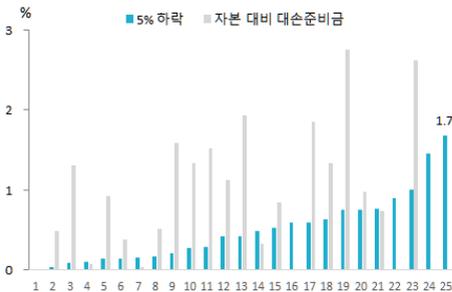
주: 1) 손해보험회사는 국내 일반 10개사

2)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사에 동일한 충격이 발생한다는 단순한 가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증가를 점검해 보자. 이를 위해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중 5%가 투기등급(BB+ 이하) 하락 혹은 30일 이상 연체 가정한다. 그리고 투기등급의 부도율은 16%, 부도 시 미회수율은 80%를 가정한다. 이러한 충격에 대해 대다수 보험회사는 대손준비금 이하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나, 일부 보험회사는 대손준비금 이상의 자본 감소 및 비용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²⁹⁾ 이러한 충격이 커질수록 대손충당금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본 예시는 일정 경제충격이 모든 회사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단순한 가정에 의한 결과이다. 실제로는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회사별 영향은 상이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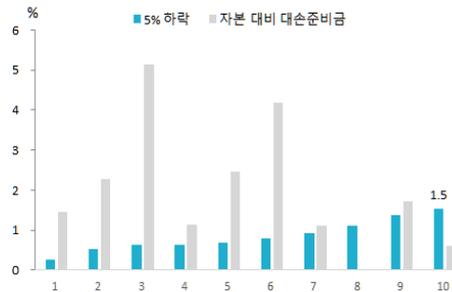
〈그림 Ⅲ-13〉 신용등급 하락 시 자본 감소 비율(생보사)



주: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Ⅲ-14〉 신용등급 하락 시 자본 감소 비율(손보사)



주: 1) 손해보험회사는 국내 일반 10개사

2)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이 높은 일부 보험회사들은, 그 비율 확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선제적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보험회사는 IFRS 9 시행을 가정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하여 자본 대비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29)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대손준비금 이상이면, 초과분은 대손상각비(비용)가 발생함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투기등급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은 BBB 등급의 비율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4. 자산-부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영향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산-부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영향은 회계기준 전환 이후에도 보험회사 대부분의 부채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시가평가되지만 자산의 상당부분은 상각후원가(AC) 혹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되는 데서 발생하는 기업회계상 자본의 수준 및 변동성의 변화를 일컫는다. 이러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대표적인 보험회사를 가정한다. 운용자산은 10조 원이고 책임준비금과 자본은 각각 9조 원, 1조 원으로 가정하며, 비운용자산 및 기타부채는 없으며, 당기손익인식 자산 1조 원은 모두 비금리부자산이고 나머지 9조 원은 금리부자산으로 가정한다. 또한 금리부자산 및 금리부부채 9조 원의 듀레이션은 모두 10년으로 가정한다.³⁰⁾ 즉, 듀레이션 갭이 0년이다. 매도가능증권은 5조 원, 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은 4조 원(시가는 5조 원)이며 책임준비금의 시가는 10조 원으로 가정한다. 각 측정 방법별 자산 비중과 부채/자본 비율은 현실적인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하다.³¹⁾ 다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듀레이션 갭이 0년이라는 것과 당기손익인식 증권 비중이 10%로 IFRS 9 전환 시의 비중(〈그림 Ⅲ-4〉 참조)과 유사하게 가정하는 등의 비현실적 가정을 하였으나, 이러한 가정은 핵심적인 영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을 현실적으로 완화시키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30) 본고에서 듀레이션은 금리민감도를 나타내는 수정듀레이션을 지칭함

31) 2016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자본 비율은 833%이며, 일반계정부채/자본 비율은 879%임. 또한, 운용자산 중 매도가능증권 비중은 54%, 상각후원가로 인식하는 자산 비중은 44%임(〈그림 Ⅲ-2〉 참조)

〈그림 Ⅲ-15〉 대표적 보험회사에 대한 가정

현 행		IFRS 9 전환 시 자산에 대한 가정	
자산 IAS 39	부채 IFRS 4	CASE 1	CASE 2
당기손익인식 1조원	책임준비금 9조원 (시가 10조원)	FVPL 1조원	FVPL 1조원
매도가능 5조원		FVOCI 5조원	FVOCI 5조원 + 2.5조원
상각후원가 4조원 (시가 5조원)		AC 4조원 (시가 5조원)	AC 2조원 (시가 2.5조원)
	자본 1조원		

먼저 전환 시점의 자본 변화를 살펴보자. 비교를 위해 이 회사가 회계기준 전환 시 자산의 비율이 두 가지로 변하는 것을 고려한다. 첫째(CASE 1), 매도가능증권이 모두 그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며, 상각후원가(AC) 혹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도 모두 그대로 전환되는 경우를 고려한다. 둘째(CASE 2), 기존 매도가능증권이 모두 그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며, 상각후원가(AC)로 측정되던 자산의 절반(원가 2조 원, 시가 2.5조 원)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재분류되는 경우를 고려한다.

〈그림 Ⅲ-16〉 전환 시 기업회계상 자본의 변화

CASE 1		CASE 2	
자산 IFRS 9	부채 IFRS 17	자산 IFRS 9	부채 IFRS 17
FVPL 1조원	책임준비금 10조원	FVPL 1조원	책임준비금 10조원
FVOCI 5조원		FVOCI 5조원 + 2.5조원	
AC 4조원 (시가 5조원)		AC 2조원 (시가 2.5조원)	
			자본 5천억원

두 경우 모두 듀레이션 갭이 0년으로 자산-부채 가치를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시 기업회계상 자본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CASE 1의 경우 원가 9조 원이었던 책임준비금이 시가평가로 10조 원으로 표시되고, 자산은 회계상 변화가 없어 자본 1조 원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CASE 2의 경우 상각후원가(AC) 측정 자산의 절반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자산으로 재분류되어 자산의 회계상 가치가 10.5조 원이 되며, 이에 자본은 5천억 원으로 표시된다. 회계제도 전환 시점에 상각후원가(AC) 측정 자산의 비중이 작을수록, 상각후원가(AC) 자산의 원가와 시가 차이가 작을수록 자본 감소가 덜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 및 부채의 만기가 긴 보험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은행처럼 자산 및 부채의 만기가 짧은 경우는 시가와 원가 간의 괴리가 적어 위와 같은 극단적인 자본 감소는 일어나기 어렵다.

다음으로 IFRS 9 전환 이후 금리 변화에 따른 자본 변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과 상각후원가(AC) 자산의 듀레이션이 모두 10년으로 같다고 추가로 가정한다. CASE 1의 경우 금리가 1%p 상승하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가치가 10% 감소³²⁾하여 4.5조 원이 되고, 책임준비금 또한 듀레이션이 10년이기 때문에 가치가 10% 감소하여 9조 원이 된다. 따라서 부채가 자산보다 5,000억 원 더 많이 감소하여 자본이 5,000억 원 증가하게 된다. CASE 2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이 10%인 7,500억 원 감소하게 되며, 이는 부채가 자산보다 2,500억 원 더 많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은 2,500억 원 증가하여 7,500억 원이 된다(〈그림 III-17〉). 한편, 금리가 하락할 경우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본이 감소한다.

듀레이션 갭이 0년이더라도 상각후원가(AC)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기업회계상 자본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타포괄손익-

32) 본고에서 듀레이션은 금리민감도를 나타내는 수정듀레이션을 지칭함. 즉, 금리부자산의 듀레이션이 10년이라는 것은 금리 1%p 상승에 의해 금리부자산의 가치가 10%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본 예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듀레이션(금리민감도)을 10년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5조 원은 금리 1%p 상승에 의해 그 가치가 10% 하락한 4.5조 원(= 5조 원 × 0.9)이 됨

공정가치(FVOCI) 자산의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성은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CASE 1의 경우 만약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의 듀레이션이 15년이었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이 7,500억 원 감소하여 자본이 2,5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회계기준 전환이후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성을 낮추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비중 및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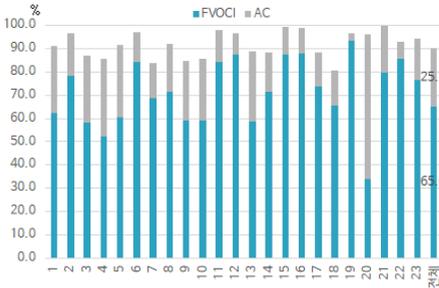
〈그림 Ⅲ-17〉 전환 이후 자본 변동(금리 1%p 상승 시)

CASE 1			CASE 2	
자산 IFRS 9	부채 IFRS 17		자산 IFRS 9	부채 IFRS 17
FVPL 1조원	책임준비금 10조원*(1-0.1) = 9조원		FVPL 1조원	책임준비금 9조원
FVOCI 5조원*(1-0.1) = 4.5조원			FVOCI 7.5조원*(1-0.1) = 6.75조원	
AC 4조원 (시가 4.5조원)		+0.5조원	AC 2조원 (시가 2.25조원)	
	자본 0.5조원		자본 0.75조원	

이제 실제 보험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산-부채 불일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 앞에서 가정하였듯이 IFRS 9 적용 시 매도가능증권 중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은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재분류되며, 상각후원가 측정 자산(단기보유증권) 중 채권은 모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재분류됨을 가정한다. 주식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 적용에 의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 및 측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처분 시 처분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계열사 주식 이외에 대부분의 주식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증권이나 기타증권(파생결합증권)의 대부분도 SPPI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들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된다는 것은 비교적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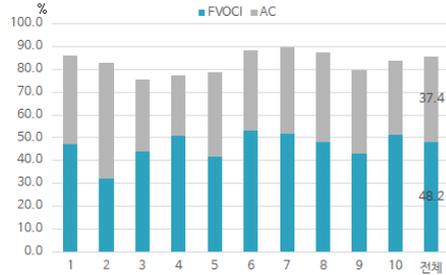
이러한 가정에 의해 IFRS 9 전환 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 및 측정될 자산의 비중을 추정해보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65.0%, 손해보험회사는 48.2%이다.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2016년 말 기준으로 IFRS 9을 적용할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가 회계기준 전환 시점에 자본을 더 증가시키고, 전환 이후 자본변동성을 완화시키려면 상각후원가(AC) 자산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8〉 IFRS 9 전환 시 FVOCI 자산 비중(생보사)



주: 1) 2016년 말 기준
2) 운용자산 대비 비중
자료: 생명보험협회

〈그림 III-19〉 IFRS 9 전환 시 FVOCI 자산 비중(손보사)



주: 1) 2016년 말 기준
2) 운용자산 대비 비중
자료: 손해보험협회

이제 2016년 말 데이터를 바탕으로 IFRS 9을 적용할 때 금리에 의한 자본변동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자. 먼저, 기업회계상 자본의 변동률은 $-(D_{FVOCI} - D_L \times \frac{L}{FVOCI}) \times \frac{FVOCI}{K} \times \Delta i$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D_{FVOCI} , D_L 은 각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듀레이션과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을 의미하며, FVOCI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규모, L은 보험부채 규모, K는 자본 규모, Δi 는 이자율 변화분을 의미한다. 자본변동률 식의 도출은 금융감독원(2017)의 pp. 70~71를 참조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상각후원가(AC) 자산은 원가로 표시되기 때문에 A(자산)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대체하면 본고의 식이 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및 부채의 듀레이션은 각 사의 경영공시 자료를 참조하였다. 2017년부터 RBC 기준의 강화로 회사마다 부채 듀레이션을 산출

한 잔존만기 최대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고, 좀 더 실제에 가까운 듀레이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인 23개 생보사 중 11개사, 10개 손보사 중 2개사는 이미 최대구간을 30년으로 적용하여 부채 듀레이션을 산출하였다. 본고에서는 모든 회사의 듀레이션을 잔존만기 30년을 적용한 듀레이션으로 보정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보험사가 잔존만기를 20년으로 적용한 2016년 말과 회사별 적용 잔존만기가 다른 2017년 6월 말의 부채 듀레이션을 비교하여 보정하였다. 2017년 6월 말에 30년(이상)을 적용한 회사들의 듀레이션 증가분이 생보사의 경우 4.6년, 손보사의 경우 1.0년이다. 이를 잔존구간 10년 증가에 의한 부채 듀레이션 증가 효과로 가정하여 다른 회사들의 부채 듀레이션을 보정하였다. 이러한 보정에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보험회사의 실제 듀레이션에는 변화가 없다는 가정과 잔존만기 확대에 따른 RBC 듀레이션 증가 효과는 모든 보험회사가 평균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 외에 2016년도까지 적용했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와 2017년 개정된 20~25년 미만 구간 적용 시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가정도 내포되어 있다. 이하 분석에서는 보정한 부채 듀레이션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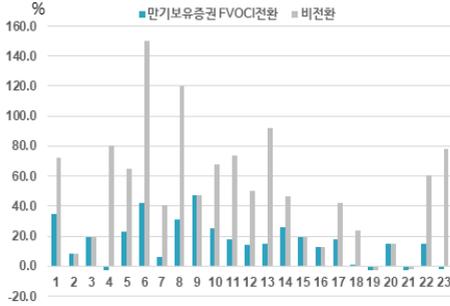
〈표 Ⅲ-4〉 보험회사 RBC 기준 부채 듀레이션

(단위: 년)

적용 잔존만기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16.12	'17.6	증분	보정	'16.12	'17.6	증분	보정	
생보	20~25년 미만	9.8	9.8	0.0	+4.6	4.7	4.9	0.2	+0.9
	25~30년 미만	10.6	11.9	1.3	+3.3	4.6	5.5	0.9	+0.2
	30년 이상	11.0	15.6	4.6	0	3.6	4.7	1.1	0
손보	20~25년 미만	7.6	6.9	-0.7	+1.7	6.2	7.6	1.4	+0.7
	25~30년 미만	8.6	8.9	0.3	+0.7	5.7	8.0	2.3	0
	30년 이상	6.0	7.0	1.0	0	4.7	6.8	2.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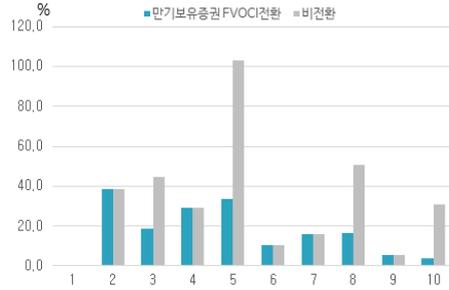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그림 Ⅲ-20〉 회계기준 전환 시
자본변동성(생보사)



주: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Ⅲ-21〉 회계기준 전환 시
자본변동성(손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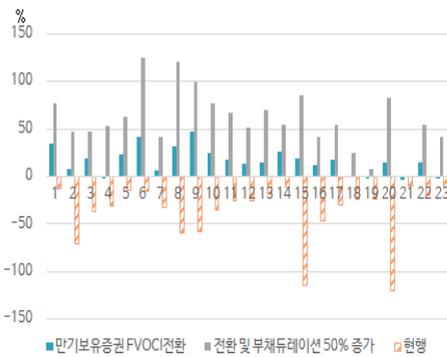
주: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Ⅲ-20〉과 〈그림 Ⅲ-21〉은 2016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새로운 회계기준(IFRS 9 및 17)을 적용했을 때, 금리 1%p 상승 시 기업회계상 자본의 변동률이 생보사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금리 1%p 하락 시 자본변동률은 마이너스 부호만 붙이면 된다. 진한 색은 현행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으로 재분류했을 때의 자본변동률이며, 옅은 색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자본변동률을 나타낸다. 이미 일부 보험회사들은 상각후원가(AC)로 측정되는 만기보유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모두 전환하였기에 두 경우의 자본변동률 차이가 없다. 만기보유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재분류하지 않은 경우엔 일부 회사의 자본변동률이 100% 이상이 된다. 반면, 만기보유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재분류할 경우 모든 보험회사의 자본변동률이 50% 이하가 된다.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만기보유증권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기업회계상에서 부채는 원가법으로 측정되므로 부채 듀레이션은 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은 $-(D_{AFS} - 0 \times \frac{L}{AFS}) \times \frac{AFS}{K} \times \Delta i$ 이다. 여기서 AFS는 매도가능증권(Available-For-Sale)을 의미한다. 즉, 현행 회계기준에서 자본의 변동은 매도가능증권의 듀레이션과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Ⅲ-22〉 및 〈그림 Ⅲ-23〉은 현행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과 새로운 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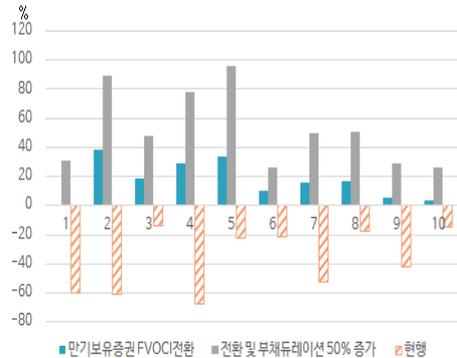
적용 시의 자본변동률을 비교한 것이다.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행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인데 방향이 정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행 회계기준에서 부채는 원가법으로 측정되므로 자산의 변동만이 자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행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이 매우 높은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회계기준 전환 시 오히려 자본변동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회계기준상의 자본변동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변동성을 관리한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오래전부터 ALM을 중시한 회사들로 볼 수 있다. 반면 현행 회계기준상 자본변동성이 낮은 회사들은 회계기준 전환 시 만기보유증권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재분류를 가정하더라도 자본변동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Ⅲ-22〉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 비교(생보사)



주: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Ⅲ-23〉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 비교(손보사)



주: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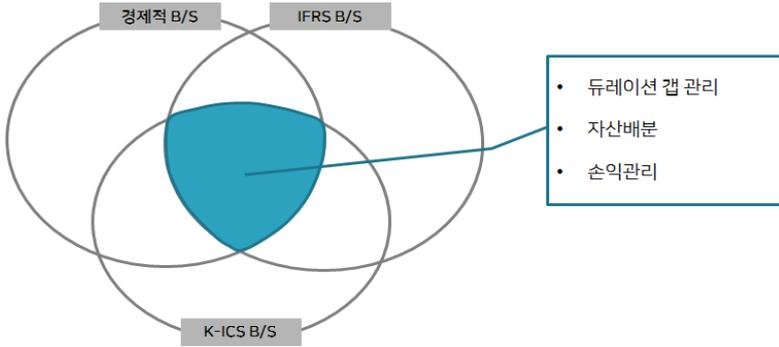
IV.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1. ALM 및 자산배분 시 고려사항

현행 기업회계 및 감독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과 회계 정보가 매우 불일치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큰 보험회사들은 자본이 실질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계상으로는 자본이 증가한다. 이 경우 회계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회사들이 그렇지 못했다. 금리 하락기에는 실질적으로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을 확충하고 ALM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회사들이 그렇지 못했다. 상당수의 회사들은 회계상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등 회계적 관점의 대응에 치중했던 것이 현실이다.

향후 회계기준의 변화로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과 회계 정보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실질에 관한 정보가 회계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보험회사는 경제적 실질에 대한 관리에 주력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경제적 관점의 현금흐름 및 자본관리에 중심을 두되, 향후 시행될 IFRS 및 K-ICS와 공통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1〉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2. ALM 및 자산배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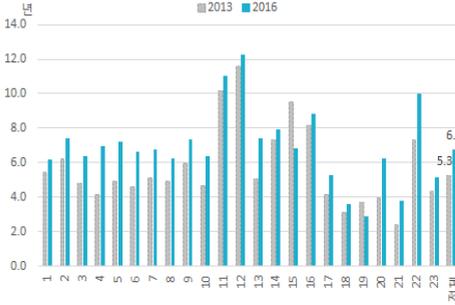
ALM은 자산-부채의 듀레이션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이 적절하게 매칭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ALM 현황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부채의 현금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데이터가 없다. 본고에서는 듀레이션 매칭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ALM 현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³³⁾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자산 듀레이션을 빠르게 확대시켜 왔다. 생보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평균 1.4년을, 손보사는 1.7년을 늘렸다. 특히, 자산 듀레이션이 낮았던 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산 듀레이션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2〉, 〈그림 IV-3〉 참조). 자산 듀레이션의 증가는 시장금리 하락에 의한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듀레이션 자연 감소분³⁴⁾ 이상으로 신규 매입 자산의 듀레이션을 증가시킨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보험회사는 최근 수년간 국내 시장에서 만기 10년 초과 국채의 대부분을 매수하고 있으며, 이에 만기 10년 초과 국채의 수익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³⁵⁾

33) 참고로 향후 도입 예정된 K-ICS에서 금리위험은 금리 상승·금리 하락·금리평행·금리경사 시나리오에 따라 각 리스크를 산출한 후 시나리오별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결합할 예정이다

34)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잔존만기 감소에 의해 자산 듀레이션의 감소분을 말함

〈그림 IV-2〉 생명보험회사 RBC 자산
듀레이션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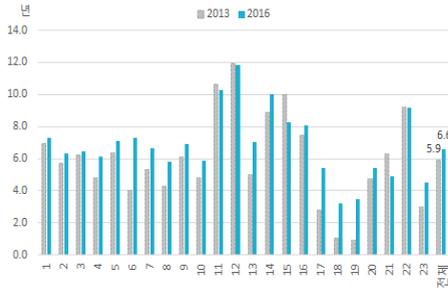
〈그림 IV-3〉 손해보험회사 RBC 자산
듀레이션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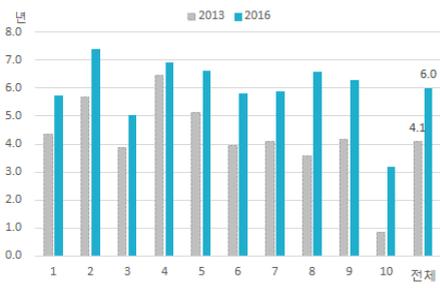
그러나 최근 3년간 RBC 부채 듀레이션도 자산 듀레이션 못지 않게 증가했다. 생보사는 3년간 평균 0.7년, 손보사는 1.9년 확대되었다. 금리 하락으로 인해 최저보증이율이 부리되는 부채가 증가하여 듀레이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4〉 생명보험회사 RBC 부채
듀레이션



자료: 경영공시

〈그림 IV-5〉 손해보험회사 RBC 부채
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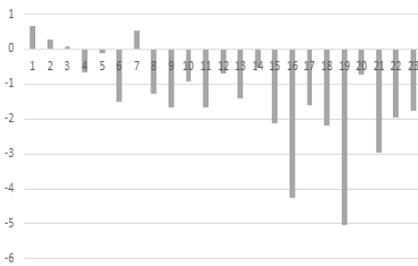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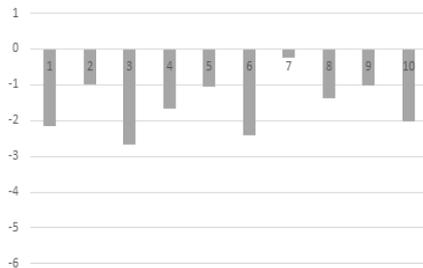
35) 임준환·황인창(2017)은 최근의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을 설명하고 있음

현행 RBC 기준으로는 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³⁶⁾이 길지 않으나, 대다수 보험회사의 실제 부채 듀레이션은 RBC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보험회사의 실제 듀레이션 갭은 상당할 것이다.³⁷⁾ 본고에서는 앞서 이용한 RBC 보정 듀레이션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을 살펴본다. <그림 IV-6>, <그림 IV-7>을 보면 부채 듀레이션 산출의 최대 잔존만기를 30년으로만 보정하더라도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이 -3년 이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고금리 확정금리형 부채의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다. 현행 RBC 기준 듀레이션 갭과 실제(경제적) 듀레이션 갭의 차이는 고금리 확정금리형 부채의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클 것이다. 영업기간이 짧아서 확정금리형 부채 비중이 낮은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보험회사의 실제 듀레이션 갭은 보정 듀레이션 갭의 150~200%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긴 듀레이션을 감안하면, 부채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될 2021년까지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갭을 줄이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줄일 수 있는 듀레이션 갭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보험산업의 큰 문제이기도 하다.

〈그림 IV-6〉 생명보험회사 보정
듀레이션 갭



〈그림 IV-7〉 손해보험회사 보정
듀레이션 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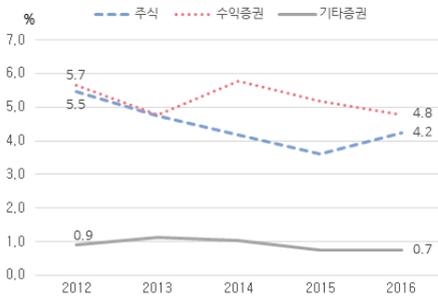


36) 듀레이션 갭 =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익스포져 /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37) Sun(2017)에 따르면, 한 보험회사의 경우 RBC 부채 듀레이션은 6~7 정도이지만, 실제(경제적) 부채 듀레이션은 13~14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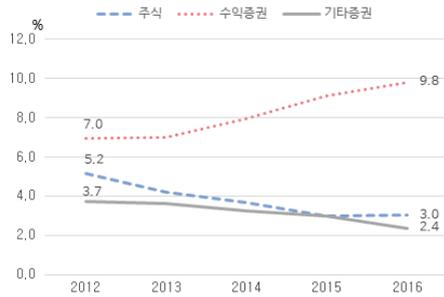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자산배분을 IFRS 9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먼저 IFRS 9 시행 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 및 측정될 수 있는 자산(주식, 수익증권, 기타 증권)의 추이를 본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가능 자산의 전체적인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주식과 기타증권의 비중은 줄이고 있는 반면, 수익증권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회계기준 전환 이후 손익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손해보험회사는 수익증권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8〉 생명보험회사 FVPL 자산



주: 운용자산 대비 비중
자료: 생명보험협회

〈그림 IV-9〉 손해보험회사 FVPL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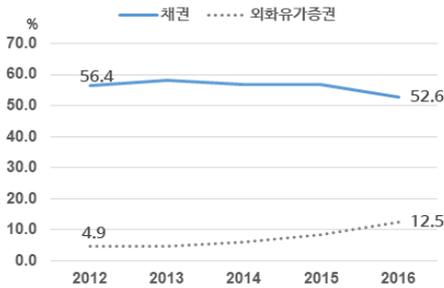


주: 운용자산 대비 비중
자료: 손해보험협회

채권과 외화유가증권³⁸⁾의 경우 IFRS 9 전환 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분류 및 측정 가능한 자산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가능 자산의 전체적인 비중은 생보사의 경우 증가하는 반면, 손보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이다. 생보사 및 손보사 모두 (국내)채권의 비중은 축소하는 반면, 외화유가증권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화유가증권의 비중 확대는 국내 장기채권의 공급 부족 및 낮은 수익률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화채권은 시가가 국내 금리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부채와 매칭하는 자산으로서 한계점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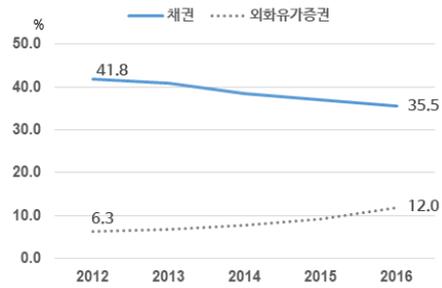
38) 단, 외화유가증권 중 일부는 주식이나 수익증권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가능 자산임

〈그림 IV-10〉 생명보험회사 FVOCI 자산



주: 운용자산 대비 비중
자료: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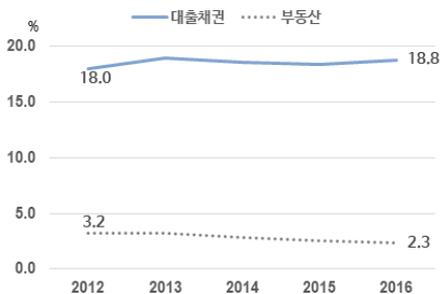
〈그림 IV-11〉 손해보험회사 FVOCI 자산



주: 운용자산 대비 비중
자료: 손해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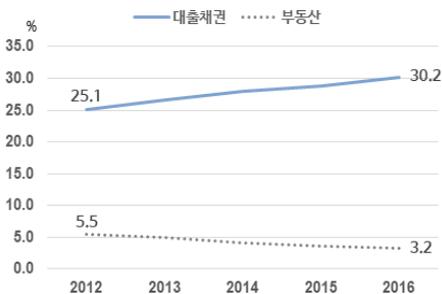
IFRS 9 시행 시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대출채권과 부동산이다. 생명보험회사는 대출채권 비중을 다소 높인 반면, 부동산 비중을 다소 낮추어 상각후원가(AC) 자산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부동산 비중을 줄인 것 이상으로 대출채권 비중을 확대하여 전체 상각후원가(AC) 자산의 비중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 확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각후원가(AC) 자산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2〉 생명보험회사 AC 자산



주: 운용자산 대비 비중
자료: 생명보험협회

〈그림 IV-13〉 손해보험회사 AC 자산



주: 운용자산 대비 비중
자료: 손해보험협회

3. 자본변동률 분석

앞서 분석하였듯이 회계기준의 전환은 크게 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전환 이후 자본변동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들은 선제적으로 자본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보험회사를 자본변동성 수준에 의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LM 및 자산배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보험회사를 IFRS 9 시행 시 자본변동률의 크기 순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자본변동률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해³⁹⁾하여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자본변동률이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부채 듀레이션이 높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frac{L}{FVOCI}$)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특징이 있다. 이는 자본변동률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비중이 낮아 자본변동률이 높아진 면이 있다는 의미이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비록 그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한 경향이 보인다. 자본변동률이 높은 보험회사들은 부채 듀레이션이 깊어도 불구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비중이 낮아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 듀레이션 축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들은 우선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변동률이 높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대비 자본이 적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손보사는 절대적인 자본의 양이 적어 변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에 자본변동성 축소 측면에서도 자본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9) 자본변동률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분해해서 살펴봄으로써 자본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볼 수 있음

〈표 IV-1〉 보험회사 자본변동률 분해

(단위: 개, %, 년, 배)

구분	자본변동률	회사 수	FVOCI 비중	AC 비중	D_{FVOCI}	D_L	$\frac{L}{FVOCI}$	$D_{FVOCI} - D_L \times \frac{L}{FVOCI}$	$\frac{FVOCI}{K}$
생보	10% 미만(1)	7	73.5	17.5	6.7	5.9	1.1	0.0	8.7
	10~20% 미만	9	73.1	21.0	9.9	11.2	1.2	-2.3	7.6
	20% 이상(2)	7	67.1	23.1	8.1	9.7	1.3	-4.2	9.7
	차이((2)-(1))	-	-6.4	5.6	1.4	3.8**	0.2*	-4.2**	1.0
손보	10% 미만(1)	3	47.3	36.0	9.9	6.9	1.5	-0.7	5.1
	10~20% 미만	4	49.2	36.1	9.0	7.8	1.6	-3.5	4.6
	20% 이상(2)	3	41.6	38.1	9.7	8.6	1.7	-4.7	7.7
	차이((2)-(1))	-	-5.7	2.1	-0.2	1.7	0.2	-4.0**	2.6*

주: 1) 2016년 말 기준 데이터 이용, 단순평균

2) 자본변동률은 만기보유증권이 모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된다고 가정하여 산출

3) 부채 듀레이션은 보정 RBC 듀레이션 이용

4) **, *는 각각 유의수준 5%, 10%하에서 유의

자본변동률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들은 보정한 듀레이션 갭이 크고,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비중이 다소 낮다는 특징도 관찰된다. 자본변동률이 높은 생보사들은 최근 3년간 자산듀레이션을 1.5년 확대시켰으나, 여전히 듀레이션 갭이 긴 것으로 추정된다. 듀레이션 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의 비중을 자본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들처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은 자본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의 비중이 높아 경제에 충격 발생 시에 대손충당금 설정이 높아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도 있다. 자본변동률이 높은 손보사의 경우 듀레이션 갭이 길지는 않지만 RBC 비율이 낮은 것이 관찰된다. 이들은 회계제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 가장 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손보사는 생보사에 비해 저신용등급 자산 비중이 높고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비중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손보사의 경우 금리부자산 비중 확대를 통해 듀레이션 갭을 줄일 여지가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표 IV-2〉 보험회사 자본변동률 그룹별 특성

(단위: %, 년, 배)

구분	자본변동률	자본 대비 저신용 등급	자산 듀레이션 2013	자산 듀레이션 2016	자산 듀레이션 증분	금리부 부채/금리 부자산	듀레이션 갭(보정)	RBC 비율
생 보	10% 미만(1)	72.9	4.1	5.2	+1.1	0.89	-0.1	230.3
	10~20% 미만	79.8	7.2	8.2	+1.1	0.9	-1.6	219.3
	20% 이상(2)	85.0	5.4	6.9	+1.5	0.94	-2.3	205.2
	차이((2)-(1))	12.1	1.3**	1.6**	0.4	0.15	-2.2**	-25.0
손 보	10% 미만(1)	160.6	4.4	5.0	+0.6	1.02	-1.9	183.3
	10~20% 미만	111.4	3.9	6.4	+2.5	0.99	-1.4	202.6
	20% 이상(2)	132.0	5.9	7.0	+1.1	0.99	-1.5	147.2
	차이((2)-(1))	-28.6	1.5*	2.0*	0.5	-0.03	0.5	-36.1**

주: 1) 2016년 말 기준

2) **, *는 각각 유의수준 5%, 10%하에서 유의

자료: 경영공시

마지막으로 자본변동률 그룹별 자산배분의 특징을 살펴본다. 자본변동률이 높은 그룹은 대출채권 비중이 높고, 채권의 비중이 낮은 특성이 관찰된다. 이들은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 축소를 위해 상각후원가(AC)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비중을 낮추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채권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본변동률이 높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기타증권(주로 파생결합증권)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시가의 변동성이 여타 증권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기타증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자본변동성이 높은 손보사는 회계기준 전환 시 손익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표 IV-3〉 보험회사 자본변동률 그룹별 자산배분

(단위: 개, %)

구분	자본변동률	회사 수	주식	수익 증권	기타 증권	관계종속 회사주식	채권	외화 유가 증권	대출 채권	부동산
생보	10% 미만	7	0.4	7.4	1.2	1.0	54.8	16.7	15.1	1.3
	10~20% 미만	9	8.1	2.1	0.3	2.4	57.9	5.9	18.2	2.3
	20% 이상	7	1.2	6.9	1.1	0.9	43.9	18.9	22.0	3.1
손보	10% 미만	3	1.2	15.6	1.3	1.3	28.4	16.8	28.9	3.8
	10~20% 미만	4	4.2	6.3	2.4	1.1	40.5	9.9	29.6	2.9
	20% 이상	3	1.1	14.6	4.5	0.1	25.6	11.6	36.2	3.4

주: 1) 2016년 말 기준 데이터 이용, 가중 평균

2) 자본변동률은 만기보유증권이 모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된다고 가정하여 산출

V. 결론 및 시사점

IFRS 9은 현행 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준다. 첫째,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방식 변화에 의해 각 측정 방식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중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자본변동성과 손익변동성이 달라진다. 둘째, 손상인식 방법의 변화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자산-부채 간 측정 방식 불일치⁴⁰⁾에 의한 자본변동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자본변동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향에 대해 입수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전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보험회사는 경제적 관점의 현금흐름 및 자본관리에 중심을 두되, 향후 시행될 IFRS 및 K-ICS와 공통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듀레이션 갭과 자본변동성을 동시에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 및 듀레이션을 확대시켜야 한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상각후원가(AC) 자산인 대출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채권 비중을 확대한다면 IFRS 9 시행 이후 자본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상품 중 상각후원가(AC) 및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 및 측정될 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40) 이는 Ⅲ장 4.에서 설명한 것을 의미함. 즉, 자산의 적지 않은 부분이 AC로 측정되는 반면, 부채의 대부분은 FVOCI로 측정되는 데서 오는 불일치를 의미함

해야 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 및 측정되기 위해서는 SPPI 충족요건 외에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형이 필수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은 상각후원가(AC) 자산에 비해 경영진 보고 방식, 위험관리 방식, 현금흐름 창출 방식, 관리자 보상 방식 등에서 보다 동태적이며 액티브한 운용을 요구한다. 대출채권은 상각후원가(AC)로 분류 및 측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 매각이 가능한 기업대출 채권의 경우 매각활성화를 통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분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될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 직접투자로 전환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 및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의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현재 생·손보 각각 1.7%, 2.6% 수준인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의 비중이 IFRS 9을 적용할 경우 각각 9.8%, 14.5%로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 비중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줄이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비중을 확대한다면 자본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다. 비계열사 주식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기타포괄손익선택권 행사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 및 측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시행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요구자본 대비 기대수익률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 비중 축소와 장기채 비중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률 저하는 투자영역의 다변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이면서도 국내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선진국 장기 회사채나 신흥국 국제채 등의 투자 비중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3~4년간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해외투자 비중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⁴¹⁾ 해외투자 급증의 배경은 주로 듀레이션 확대 및 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 기타포괄손익

41) 조영현·이혜은(2016) 참조

-공정가치(FVOCI) 자산으로 측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해외투자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회계기준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 및 측정되기 어려운 구조화채권 등 대체투자보다는 채권 중심의 투자가 바람직하다. 다만, 외화채권은 시가의 변동이 해외 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부채의 변동과 불일치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한 적정 해외투자 비중 혹은 (매칭 부채와 자산 간) 가치변동 불일치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자산의 비중 축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의 비중 확대를 시행할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 구성도 달라질 것이다. 주가 및 금리리스크가 줄고 신용 및 외환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 및 외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IFRS 9 시행 이후 자본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회사들은 부채 듀레이션이 높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이 낮은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들 보험회사는 부채 듀레이션의 지속적인 축소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채 듀레이션 축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금리부)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파생상품을 이용한 자산 듀레이션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계약을 통해 자산 듀레이션을 1년 가까이 확대시켰다.⁴²⁾ 다이이치 생명뿐만 아니라 대다수 글로벌 보험회사들도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음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금리리스크 관리의

42) Dai-ichi Life(2016) 참조

보조수단으로 금리파생상품의 활용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된다.

자본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들은 대출채권 비중이 높고, 채권의 비중이 낮은 특성이 관찰된다. 이들은 기업회계상 자본변동률 축소를 위해 상각후원가(AC)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비중을 낮추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채권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본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보험회사들은 이 외에도 저신용등급 자산 비중 축소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RBC 비율 제고와 자본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또한, 이들이 경기침체가 예상되거나 경제 위기 발생 시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이 가장 큰 그룹이라는 점에서도 실행의 필요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은 앞서 언급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리부자산 비중 확대에도 더욱 주력함으로써 자본변동성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독당국에 대한 시사점

감독당국은 기업회계기준 전환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자산배분 및 리스크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해외 장기 국채 및 회사채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식, 파생결합증권 및 대출채권의 비중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가 및 금리리스크가 줄고 해외신용 및 외환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의 장기채 및 해외채권 투자 쏠림 현상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해외 위험자산의 비중과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정 위험자산으로의 쏠림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6.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적용영향분석을 위한 공개협약안」
- _____ (2017a. 1),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 _____ (2017b. 12), 「17.3분기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 김수연(2016), 「IFRS 9.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 도입으로 인한 영향 검토」, 현대 Milestone, 현대증권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2015),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IFRS와 RBC 연계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 오창수(2015), 「IFRS4 도입에 따른 감독제도 운영방안」,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3호, 보험연구원
- 오창수 · 박종각(2016),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영향분석」, 『계리학연구』, 제8권 제1호
- 임준환 · 황인창(2017. 11. 20),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과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조영현 · 이해은(2016. 9. 5),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급증과 과제」,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_____ (2017),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한국회계기준원(2016),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강의자료
- Dai-ichi Life(2016), “Dai-ichi Life’s Investment Strategy”, IR 자료
- J. P. Morgan(2016), “Preparing for IFRS 9: Investment Implication for Insurers”, Investment Insights
- PWC(2015. 3), “IFRS 9 Hedging in Practice Frequently Asked Questions”
- Sun, L.(2017. 9. 15), “Asset Management under IFRS 17”,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보험연구원

부록 I. IAS 39과 IFRS 9의 분류 및 측정 비교

구분	IAS 39	IFRS 9
금융자산 분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목적*, 의도와 능력**, 활성시장 공시가격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분류 * 단기매매 및 단기이익획득 목적 등 ** 만기보유 의도와 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2가지 ①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② 그 외의 경우 • 사업모형 3가지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②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매 ③ 기타(매매 등)
금융자산 범주 및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 • 만기보유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금융부채 동일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가능 ① 회계불일치 제거 or 유의적 감소 ② 금융상품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평가 ③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① 회계불일치 제거 or 유의적 감소의 경우에만 지정 가능 • 금융부채: IAS 39와 동일 (①,②,③ 모두 지정 가능)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상품, 채무상품 구분 없이 매도 가능항목으로 지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상품의 경우에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지정 가능(단, 단기매매목적 또는 사업결합 시

구분	IAS 39	IFRS 9
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로 측정 	<p>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 측정 규정을 삭제 • 대신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규정 *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최신 정보 불충분 등
금융자산의 재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요건하에 범주 간 재분류 가능 • 만기보유금융자산을 타 범주로 재분류 시 제한규정* 존재 * 향후 2년간 금융자산을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는 분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모형 변경시 재분류 가능 • 만기보유금융자산에 대한 분류제한규정 삭제
금융부채 범주 및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관련 평가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없음(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범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경우(단, 회계불일치 제거 또는 감소 사유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 • 공정가치변동액 중 자기신용위험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동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융부채 제거(소멸) 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고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이전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의 당기손익으로의 재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상품, 지분상품 관계없이 처분 또는 손상 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상품: 처분 또는 손상 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 지분상품: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할 수 없으며,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이전

구분	IAS 39	IFRS 9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금융부채 모두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면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회계처리 * 경제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과 관련, 파생상품 정의 충족, 당기손익인식항목에 미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분리하지 않고, 전체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범주를 구분 • 금융부채: IAS 39과 동일

자료: 금융감독원(2015)

부록 Ⅱ. IAS 39과 IFRS 9의 손상 비교

구분	IAS 39	IFRS 9
손상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손실모형 :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신용손실모형 :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손상으로 인식
손상대상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상품, 지분상품 모두) • 원가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만)
손상금액의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또는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손상 정도에 따라 기대손실 측정대상 기간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Stage 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②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거나(Stage 2) 신용이 손상된 경우(Stage 3) : 전체기간(Lifetime)기대신용손실 • 매출채권: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모두 전체기간 신용손실을 인식하고(간편법),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에 따라 간편법 또는 일반적인 손상모형을 적용
이자수익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규정 없음(수익기준서에 따라 수익인식 여부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손상 여부에 따라 이자수익 인식대상 자산의 금액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Stage 1 & Stage 2) : 대손충당금 차감 前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② 신용이 손상된 경우(Stage 3) : 대손충당금 차감 後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자료: 금융감독원(2015)

부록 Ⅲ. IAS 39과 IFRS 9 간 위험회피회계 비교

구분	IAS 39	IFRS 9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중 위험회피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진적으로 높은 위험회피 효과가 예상되고, 사후적으로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가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관계가 존재 • 전진적인 평가만을 요구(사후적 평가는 필요 없음) • 효과성에 대한 양적 기준 없음
재조정 (Rebalan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회피회계 개시시점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조정(만기 연장 등) 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및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개시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변동으로 위험회피비율을 조정(위험회피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의 증가·감소)해야 하는 경우,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위험회피 회계처리에 포함하거나 또는 제외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중단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중단 비허용
위험회피대상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융상품 : 전체 또는 위험요소 중 외화위험요소만 지정 가능 • 순포지션(자산·부채), 파생상품과 비파생위험으로 구성된 결합위험(Aggregated Risk),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지정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융상품 : 전체 또는 별도로 식별·측정 가능한 위험요소(외화위험요소 포함) 모두 지정 가능 • 순포지션(자산·부채), 파생상품과 비파생위험으로 구성된 결합위험(Aggregated Risk),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지정 가능
위험회피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파생금융상품 : 외화위험회피 수단으로만 지정 가능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 :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비파생금융상품 : 외화위험 이외의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구분	IAS 39	IFRS 9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 위험회피대상 및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및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위험회피회계의 대안인 공정가치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항목의 가치변동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지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당기손익과의 회계불일치를 제거 ① 차액결제가 가능한,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매출·사용의 필요에 따른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제1109호 적용대상에 미해당) ② 신용위험 익스포저(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어려움)

자료: 금융감독원(2015)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 · 박지운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 · 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운아 · 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 · 이태열 · 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 · 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 · 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 · 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효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 · 박정희 2018.1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 · 사 협력 방안 / 조용운 · 오승연 · 김동겸 2018.2
 2018-3 퇴직연금가입자교육개선 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이상우 2018.2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종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 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 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혜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이기형 · 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최 원 ·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 ·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량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080 / pgc0703@kiri.or.kr)

저자약력

조영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oungcho@kiri.or.kr)

이혜은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lhe@kiri.or.kr)

연구보고서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발행일 2018년 2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77-0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